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80
----------	-------

발의연월일 : 2021. 6. 18.

발 의 자 : 양경숙·조오섭·김수홍  
전재수·정청래·남인순  
강득구·최종윤·안민석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39조의3제3항 신설, 제20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개

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18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를 “즉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본문에”를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 본문은”을 “제1항 본문과 제2항은”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개인정보처

리자는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개인정보에”를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처리 여부·방법·시기 및 대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로 한다.

제39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39조의12제2항 본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호의6 중 “제39조의3제4항”을 “제39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12호의2 중 “제39조의3제3항”을 “제39조의3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② (생략)  <u>&lt;신설&gt;</u></p>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li> <li>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li> <li>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li> </ol>
<p>③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u>&lt;신설&gt;</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u></p>





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2. (생략)

<신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  
-----.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  
-----.

1. 2.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  
-----  
-----개인정보 항목 및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②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처리 여부·방법·시기 및 대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  
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  
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6.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 13. (생략)

③ ~ ⑤ (생략)

-----  
-----  
-----  
-----

5.·6.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39조의3제4항-----  
-----  
-----  
-----

12의3.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